

신학대학원 대체수강에 관한 내규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재학생 중 학부에서 신학대학원 기초필수과목과 동일 과목을 이수한 학생들이 해당영역(전공)에서 선택과목을 필수 과목으로 대체 수강하게 하여 보다 폭넓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신청자격) 대체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학부 및 신학대학원에서 기초필수과목과 동일한 과목을 수강하고 학점을 취득한 자이어야 한다.

제3조 (신청범위 및 과목) ① 본 대학 학부출신자들이 신학대학원의 기초필수과목과 동일과목을 이수한 경우 해당 필수과목을 해당 전공 영역의 선택 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. 단, 타 대학의 경우는 신학계열 출신자들로 제한한다.

② 대체수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학부에서 수강한 과목의 성적이 “B-”이상이어야 한다.

③ 기초필수과목 전공 영역에는 성서신학, 이론신학, 실천신학을 둔다.

제4조 (신청방법) ① 매 학기초 수강신청 변경기간에 신청서 및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신청과목은 해당 학기에 수강 신청한 과목으로 제한한다.

제5조 (대체수강과목) ① 대체할 수 있는 전공별 기초필수과목은 <별지 제1호>과 같다.

② 대체할 수 있는 학교별 대체수강 과목 현황은 별도로 정한다.

③ 신청한 대체수강 과목의 허락 및 과목(출신대학별) 추가를 위해서는 신학대학원장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. <개정 2008. 11. 18.>

④ 학교별 대체수강 과목을 대체받고자 할 경우에는 출신대학 해당과목의 수업계획서와 본교 신학대학원 과목 담당교수의 확인서를 교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11. 18., 2009. 3. 25.>

제6조 (신청취소) 신청한 대체수강 과목을 취소할 경우에는 취소신청서를 수강신청 취소 기간 내에 교학과로 제출하여야 한다.

제7조 (준용규정) 이 내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원의 학칙 및 시행세칙, 기타 관련 내규를 준용한다.

제8조 삭 제 <2008. 11. 18.>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내규는 2007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. 단, 제3조(신청범위 및 과목) 2항은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개정 내규는 2008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② 이 내규의 개정은 신학대학원 위원회의 심의로 총장이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개정 내규는 2009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.